

국제예술교육연구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세계의 다양한 예술교육을 연구하여 국내·외 예술교육 콘텐츠로 개발하고,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발전하기 위해 (학교법인)예원예술대학교 국제예술교육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본 연구소는 대학 연구소 설립 취지에 맞게 전북 임실군 신평면 본교 예원예술대학교에 둔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지역이 갖는 문화적, 학문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각 분야별 학문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 및 교육
2. 한국연구재단 등 국내 연구기관의 용역
3. 지자체 및 기타 산업체 등이 위탁하는 연구용역
4. 분야별 전문연구소와 영역 간 합동연구를 통한 융, 복합 전략연구
5. 지역민과 청소년, 재학생 상대의 양질의 교육 제공
6. 국내외 연구소와의 학술교류 및 연구용역

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4조(조직 및 임원) ① 본 연구소는 연극영화 연구분과, 영상산업 연구분과, 미술산업 연구분과, 음악산업 연구분과, 문화관광분과를 둘 수 있다.

1. 연극영화산업 연구분과는 종합예술로서 실기공연제작 및 연구를 담당한다.
2. 미술산업 콘텐츠 연구분과는 세계 각종의 국제적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소년들의 조기 교육을 위한 참여를 돕고 예술과 관광자원 개발과 교육콘텐츠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정책 자문 및 컨설팅을 담당한다.
3. 영상산업 콘텐츠 연구분과는 각 분야의 학문과 콘텐츠 미디어를 활용하여 융합하고 디자인하여 효과적인 활동을 담당하며 정부 및 관련기관의 용역 및 연구를 담당한다.
4. 음악 콘텐츠 연구분과는 음악을 통해 한류를 조성하고 국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과 주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관련 용역을 담당한다.

② 지역문화융합연구소의 직제편성은 다음과 같다.

1. 연구 소장
2. 분과위원
3. 전문(객원) 연구위원
4. 보조연구원
5. 간사
6. 사무직원

③ 연구소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1. 소장 : 1명
2. 분과 : 각 연구분과별 1명
3. 전문연구위원 : 2명

제5조(연구소장) ①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분과위원) ① 연구소장은 각 연구 분과위원을 위촉하며, 필요에 의해 증원 및 감원을 할 수 있다.

② 각 분과위원은 해당 업무를 총괄한다.

제7조(연구위원 및 연구원) ① 본 연구소에 연구위원 및 연구원(전문, 객원)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위원의 임용기간은 본 대학 재임기간으로 하고, 연구원(전문, 객원)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8조(간사 및 사무직원) 간사 및 사무직원은 필요에 의해 연구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9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, 위원은 각 연구분과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장)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고,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제11조(간사)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연구소 간사가 겸한다.

제1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
2. 내규의 제정 및 개폐
3. 연구계약체결
4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5. 객원연구원,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위촉
6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3조(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보고

제14조(보고) 연구소장은 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연구소 운영보고서(학년도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)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4. 연구계약체결 현황,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

제5장 연구 논문집

제15조(연구논문집 명칭 및 발행) ① 연구소의 논문집 명칭은 “국제예술교육연구”로 한다.

② 연구논문집은 필요에 따라 발행한다.

제16조(논문의 제출자격) 논문의 제출자격은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을 원칙으로 하며, 기타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할 수 있다.

제17조(편집위원회)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제 간행물의 편집을 위한 편집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6장 재 정

제18조(재정의 총당) ① 연구소 재정은 학술용역사업 수입금, 기부금, 기타보조금으로 총당한다.

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.

제19조(해산) 본 연구소가 해산될 때는 잔여재산은 본 학교법인에 귀속시킨다.

제7장 운영세칙

제20조(운영세칙)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8. 12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(준용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원예술대학교 연구소 운영규정에 따른다.